

##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하 재 완

위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 다 음

원심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3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증 피고인은 6가지 사실(공소사실 중 10, 11, 12, 13, 15, 19)만을 시인(목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고 자필진술서를 써서 제출한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전체 줄거리를 훑어 보면 피고인은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사회건설 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하여 공산비밀지하 조직의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공소외의 여성남을 뒤에서 조종사수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케하고 학생데모 민중봉기 등을 유발케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코자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동 또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공소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어떠한 사실이 과연 극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항소심 심판관 여러분께서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를 바라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량한 국민으로서 다시 재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4. 8.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 성 기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 항 소 이 유 서

서울구치소 재감중  
피고인 이 수 병

사건번호 74비고군형항 제15호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피고인 성명 이수병  
생년월일 1938.4.17(당 36세)  
본적 경남 의령군 [REDACTED]  
주소 서울 서대문구 [REDACTED]  
직업 삼락학원 강사

일심에서는 본 피고인의 본의가 전적으로 왜곡되고 모든 사항이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처리된 심문조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하였으므로 그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유

## 一. 정부타도의 의도 및 모의부분

1. 정부타도를 부르짖으려면 당시의 정권이 무능력하여 민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을 때에 그와 동시에 국민이 마음놓고 정권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야당 형태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야 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펴보면 박대통령께서는 유사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을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이 정권이 강력한 까닭은 안으로는 지도자의 탁월한 영도력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도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

인 행정과 경제 성장 등을 통한 서민생활의 향상으로 민심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정권은 힘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거니와 민심을 굳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 봉기나 4.19적 상황과 같은 사태를 야기 시켜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생각은 구체적인 정치현실을 망각한 하나의 백일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내부의 지도체계조차 확립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야당이나 어떠한 정체세력도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설사 4.19적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을 담당할 세력은 현재의 집권세력이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힘도 식견도 갖추지 못한 저희들을 어느 모로 따져보든 어떻게 정권을 인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언감생심 그런 상상이나 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권 타도는커녕 설령 그냥 정권을 인계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담당 운영해 나갈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저 주더라도 담당 운영해가지 못할 정권을 무엇대문에 탐내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정권타도를 위한 의도를 품어 본 적도 없거니와 그를 위한 준비를 갖춘 적도 전혀 없음을 밝히옵니다.

2.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타도를 위한 어떠한 준비나 조직 같은 것을 생각지도 않은 저로서는

- ① “인혁당재건” 같은 일은 입 밖에 낸 일도 들은 일도 없으며  
② “지도위원” 이란 것도 없는 이름이며 따라서 서도원, 도예종을 추대한 일도 없으며  
③ 소위 “4인 지도부” 란 조직도 전혀 상상한 일조차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73년 10월중에 이성재의 지압연구소의 개업인사차 그곳을 방문한 김에 우동읍, 전창일 등과 만나 얘기한 후 2회 정도 만난 일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무슨 목적을 갖고 만난 것도 아니며 그것마저 1974년에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제가 교양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연령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④ 도예종과는 두 번 만난 일이 있으나 생계 문제를 주로 대화로 나누었고 서도원, 김용원과의 대화내용도 제 2에서 말씀드리는 여정남과의 부분 이외에는 전혀 다르며 김용원으로 하여금 1973년 11월 김종대,

유진곤, 황현승, 이창복 등을 회합케 한 사실이 없으며 김한덕, 황현승, 이창복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며 유진곤, 김종대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로서 자주 만났으나 정치적 대화는 나눈 일이 없으며 박중기, 김달수와도 친구로서 만났을 뿐 조직에 관한 논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⑤ 강무갑이 맡겨 놓은 돈도 합법적 활동이 허용되면 쓰라는 유언에 따라 한푼도 쓴 일없이 그대로 보관해 왔으며, 곧 돌려주려던 참이었습니다.  
⑥ 따라서 위에 열거된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체계도 없는 것이며 소위 “지령” 할 기관도 없고 “보고” 할 성질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 二. 긴급조치 제 1호 및 4호 위반 부분

1. 학생시절에 미숙한 탓으로 저질렀던 학생운동 때문에 혼이 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도 정치적 대화를 스스로 기피해 왔을 뿐더러 정치 단체에 관여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저는 유신 헌법을 비난하거나 정부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대화 장소가 모두 다방인데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살펴주시게 바랍니다.  
2. 여정남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뭐라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응당 처벌을 받겠습니다.

① 다만 1974년 1월6일 여정남을 김용원에게 소개한 이후로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여정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저 자신이 그의 활동을 지시하거나 그의 계획에 참여한 일도 한번도 없음을 밝히오니 이 점을 정상으로 참작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② 서도원, 하재완의 소개에 따라 여정남의 생활비를 보조한 사실은 있으나 김용원이 그 돈을 누구에게 받아서 얼마나 지불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③ 소위 “민청학련” 인가 하는 단체 이름조차 김용원으로부터 들은 일이 없고 4월3일 라디오 방송으로 처음 알았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도원, 도예종, 김용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학생 활동을 중시하고, 거기에 큰 영향력이나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저는 학생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며, “3월이 결정적 시기”니 “수습위원회”니 하는 용어들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3.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 3매는 4월 6일 김용원에게서 받았습니다만 김종대에게 전한 일이 절대로 없으며, 그 내용의 무책임하고 유희적인 표현

에 분개하여 찢어서 변소에 버렸습니다.

4. 3월 21일 경북대 반독재구국투위 명의의 유인물은 김용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 三. 소위 “보고문” 방송청취부분

1. 북괴 제 5차 전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문은 기억도 없는 것으로서 김용원, 김종대에게 전달한 일은 절대로 없으며  
2. 1973년 12월계 부터 북괴 방송을 수 10회 청취했다고 하나 제가 근무하는 학원의 강의가 6:30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청취를 시작했다는 12월보다 훨씬 빠른 1월에 유진곤에게 방송청취를 권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 四. 진술의 임의성 문제

1.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문과 일주일에 걸치는 주야 연속 심문 등 위협과 회유를 겸한 정신적 위축, 그리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행해진 경찰 수사와 검찰 취조가 도저히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에 걸친 취조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본의와는 관계없이 왜곡되고, 침소봉대되어 진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끼리인데도 만나면 그것이 곧 정치적 회합이 되고, 함께 말만 하면 모의나 음모가 되니, 민주대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으며 이처럼 무서운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사회주의”란 표현이 “사회주의”로, 다시 “공산주의”로 둔갑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신을 당치도 않은 “공산주의자”로 표방한 일도 없거니와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꿈꾸어 본 일이 없음을 밝히오니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五. 현재의 심경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려는 뚜렷한 의사도 없이, 또한 평온하게 살아가려던 평소의 소견과도 다르게 여정남을 소개받아 그 일에 간접적으로나마 휘말려들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작희로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 하나의 잘못이 크게로는 국가에 커다란 누를 끼치고 적게로는 죄 없는 가족에게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히게 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 뼈를 깎는 회오를 되씹게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지금까지 계계 남아 있던 옳지 못한 생각들을 깡그리 청산하고서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에 관련되는 일없이 국가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백성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오니 극형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잠못이루며 몸부림치는 이 가엾은 피고인의 눈물겨운 정상과 꾸밈 없는 진의를 굽어 살피시와 부다 재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곡히 비옵니다.

1974.8.12

서울구치소 재감중

## 항소피고인 이 수 병

위 목이은 학소피고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보 노병 투

74 고구려학 제15호

항소 이유서

피고인 이수병

상 피고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항소사건에 있어서 피고(항소인) 이수병은 항소이유를 하기와 같이 진술함

四

一.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심리에 의하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나 민청학련이 북괴와 접촉되었다거나 그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나 민청학련이 반정부활동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반국가활동을 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의 사실심리과정에서 검찰관은 인민혁명당재건위는 북괴의 지령을 라디오로 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인민혁명당재건위의 지도위원이었던 상피고인 서도원, 동 도예종 등은 북괴의 지령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접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이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보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그 '레시바' 하나, 일본 서적 2권으로 검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본인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등인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레시바 일본서적 2권 등이 본 건에 있어서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유죄판결의 증거는 될 수 없고 위 진술조서 등도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했으나 피고인 및 그 외 상피고인 등이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고문해서 작성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원심이 채택함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임.

三.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실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음

1.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35 중 다방에서 회합 모의를 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 1, 2, 7, 8, 9, 10, 11, 13, 14, 17, 18, 19, 21, 22, 23,

26, 27, 28, 29, 31, 33 등 21개 사실이나 되고 그 중 야자수 다방 한 곳에서만 회합 등 한 것이 11개 사실이나 되는데 이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너무 상이한 사실이다. 다방에서 연락, 접선 등을 할 수 있으나 반국가적 단체구성을 위한 회합이나 그에 관련되는 모의는 할 수 없으며 또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 북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 등도 이런 곳에서는 안 하는 것이 현실임

2.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1에 있어서는 공소 외 변무갑으로부터의 170만원의 금원(金員)이나 공소사실 29에 있어서의 19만원의 금원 등이 반국가단체구성을 위한 자금으로 내란선동을 위한 거사자금으로 변용된 듯이 기소 또는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법정에 있어서의 관계상 피고인 등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그런 것이 아니고 집을 처리했다든지 생활비로 썼다든지 부인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된 것이 사실임

4.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형구형에 사형선고에 그대로의 확인은 그 양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 피고인이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1, 4호 위반 등으로 기소는 되어있지만은 그 어떤 행위에 착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그대로라도 단지 예비음모 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 사형의 선고는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그 양형이 부당함

5. 본 건 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형사사건이라고 국·내외에서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 건 심리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국회에서 한일간의 여러 회의에서 또는 국제사면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거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실 하에서 전심은 우리 국가의 권위를 위하여 국민이 납득될 수 있는 판결을, 미일 등 국제사회에 이해가 되는 판결 또는 심리가 바람직한 것임.

1974. 8. 13

피고 이수병의 변호인 변호사 조승각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사건번호 74비고군영장 제15호

## 항소 이유서

현 서울 구치소 재감중

항소인 (피고) 김 용 원

본 적 경남 함안군

주 소 서울특별시

직업 경기여고 교사

성명 김용원(金鏞元)

생년월일 1935년 11월 10일 생 (만38세)

사건명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등

## 기

위 항소인은 1947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 형량이 억울하여 불복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요지

본 항소인은 청년시절부터 인간, 사랑, 자유 등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놓고 항상 고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는데 처의 혼신적 사랑에 의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을 얻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정치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 큰 흥미를 갖지 않았으므로 이런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64년 8월 초순경 본 항소인이 중앙정보부에서 이를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도 인민혁명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그 뒤 신문지상에 인민혁명당은 무근한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비로서 그러한 명칭을 알게 된 것

뿐입니다. 본인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병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다만 오랫동안 사귀게 된 다정한 친우의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이며 결코 공산 폭력혁명을 음모 횡책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의 친구가 무슨 힘으로 정보를 타도하며 정권을 탈취하겠습니까?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옵서 이점을 널리 보살펴 주십시오. 설사 누가 정권을 맡으라고 준다해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1972.10.초순경 이수병으로부터

(김일성의 조선 노동당 제 5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 이 수록된 노트1권을 제공받아 본인의 집에 가져가 그것을 탐독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은 그러한 노트를 제공받은 일도 본 일도 탐독한 일도, 전연 없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보고문 내용은 본 항소인의 자의 진술이 아닌 타의, 즉 수사관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쓴 것임을 진심으로 밝혀 드리오며 이에 대하여 재판장 각하게옵서 재심 있어 주시옵기 앙원합니다.

2. 공소 제2항에서 기록된 바 본 항소인은 1972.11.경부터 1973.1.까지 대산 목재소에서 박중기, 김달수, 유진곤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상적 결합 및 같은 목적의 활동을 결의했다고 하였는데

(가) 본 항소인은 전기의 박중기 등은 친우로서의 관계 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1973.4.부터 7월까지 사이에 이수병으로부터 폭력혁명, 정부전복, 사상적 이론과 조직 활동에 관한 연구, 혁신계 인사 포섭, 공산비밀지하조직 구성 등의 지령을 받고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은 전무한 사실이며 다만 이수병과는 친우의 관계이지 결코 무슨 조직적 상하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지령이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3. 공소 제 3항에 기록된 바 본 항소인은 조직적 학생 데모에서 전국 규모의 민중 봉기를 유발하고 폭력혁명을 수행키 위해 비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령을 이수병으로부터 받았고 반국가 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했다고 되어 있으나

(가) 본 항소인은 전희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진심으로 맹세합니다.

4. 과도 정부로서 수습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세력 조직화가 시급하고 학생 조직에 관여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공소 제4의 사실은

(가) 전무한 사실이며 이수병은 저의 친구이지 지령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만 그는 본 항소인의 친구로서 당시 직장, 가정 등,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는 다정했던 사이이라 하겠습니다.

5. 공소 제 5항에 의하면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등과 화합하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 시기 도달 및 공산주의 경제 체제 구현을 주장하고 북괴노선을 선전하여 포섭하고 본인의 집에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진곤, 본 항소인 5명이 회합하여 학생 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목적을 달성하자는 결의를 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3인조를 구성하여 이수병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공소사실

(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위의 사람들은 절친한 친구로서 서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면은 철학적인 문제 즉 인간 그 자체, 자유, 사랑 등에 관하여 이야기나 하고 또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했을 뿐, 결코 정치적 문제나 혁명이나 조직 등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집에서 위의 5인이 회합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이수병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나) 이상과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조직원 상호 간에 서로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어찌 비밀 조직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의 사람들은 본 항소인의 동창이며 친구이외의 다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6. 공소 제 6항에 의한 사실, 1973.11월 중순경 대산 목재소에서 김한덕, 유진곤, 본인 등 3인이 모여 정보를 비방하고 학생 데모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내란을 모의했다는 사실 등은

(가) 전무한 사실입니다.

(나) 본 항소인이 대산목재소에 친분이 있어서 종종 놀러 가는 일은 있지만 김한덕과는 겨우 앞면만 있을 정도이며 상호 친밀한 처지도 아닌데 그 어찌 이러한 것을 모의할 수가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7. 공소 제 7항에 의한 사실

(가)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결코 회합이나 모의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8. 고소 제 8항에 의한 사실

(가) 항소인은 여정남을 이수병으로부터 소개받고 알게된 것이며 그 다음에 만나서 본인의 집에 함께 가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이수병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일이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수병이 “우리 학원 학생인데 실력도 있는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고 소개해서 알게 되었고 여정남은 “일어 공부를 해서 취직하려 서울에 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사귀어 본 즉 그의 성격이 깨끗하고 분명하며 사나이다운 기상이 있어 꼭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이수병은 만나지 말고 나에게 상의하라”고 교양하거나 지도한 일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 9. 공소 제 9항에 의한 사실

(가) 사실과 다릅니다. 여정남과 본인은 정부의 지나친 독재성과 학원 및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유류파동이 전세계적 현상이라 하나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오늘날 극심한 경제난, 물가고를 초래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하고 관계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을 가볍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학생 데모, 폭력 혁명, 학생 조직 등에 관해 논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이수병에게 여정남의 사상 이념의 검토결과를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상 이념을 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수병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10. 공소 제 10항의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가) 사실 김한덕과는 만난 일도 없고 정부비판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하물며 공산주의 운운이 있었겠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본인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공산주의 운운하며 정부타도, 헌법 반대를 논의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 11. 공소 제 11항의 사실에 의하면 항소인은 1974.2 일자미상 경 18:00 경 본인의 집에서 이수병, 이창복, 황현승, 김종대 등과 5인이 회합하고 자본주의 비판, 정부 전복 헌법 및 긴급조치 반대 비방을 했다는 등이온데,

(가) 5인이 함께 회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음력설에 술이나 한잔씩 하자고 청했더니 각자 자기들의 사정이 달라 5인이 함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흔히 평범한 위치에서 듣고 볼 수 있는 치솟는 물가에 대한 가벼운 정부비판이나 생활주변의 잡담, 부동산 매매 등의 이야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 12. 공소 제 12항 및 제 13항에 대한 반론

(가) 여정남으로부터 정부 전복의 중심체가 될 전국적인 학생조직체에

관해 보고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조직을 본 항소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여정남에게 활동비 조로 금5,000원을 제공한 사실도 없고 이수병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 9항에서와 같은 정부비판을 파고 젊은 기백으로 “학생들이 정의로운 의사 발표를 해야한다 “고 여정남이 주장한데 대해서 본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젊은 협기로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등 과격하게 나가는 것은 반대 “라고 본인의 견해를 표시했고, 그 이유는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생각한 바 없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혼란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건설과 자유가 병행하는 전진적이고 조용한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 12항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1974.3.20 여정남과 ”경심 “주점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경북대학에서 데모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정의감은 어느 사회에서나 깊진 것이지만 지나친 행동은 혼란만 야기하고 젊은 학생들의 희생만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빨리 취직이나 하라 “고 본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의 유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수병에게 경북대학 데모계획을 보고하거나 유인물을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수사관이 기록한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었습니다. 제 13항 공소사실은 왜곡 과장된 것입니다.

#### 13. 제 14항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

1974.3.22.20:00 경 본인의 집에 이창복과 황현승이 온 일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인물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탐독케 할 수는 없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공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 14. (가) 공소 제 15항에 대한 반론

1974.3.말경 광화문 소재 초월다방에서 여정남과 만나 생활비와 취직에 필요한 돈 100,000원만 빌려주면은 곧 집에서 갖다가 갚아주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처의 치아치료비로 유진곤으로부터 미리 빌려두었던 돈 50,000원을 우선 여정남에게 빌려주고 2, 3일 후에 전세 돈이라도 받아 형편 되는대로 더 빌려 줄테니까 그리 알고 빠른 시일에 갚아 달라고 한 일 뿐이며 민청학련의 명칭 및 데모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유인물 제작비를 제공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 공소 제 16항에 대한 반론 1974.4.2. 20:00 경 초월다방에서 역시 취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던 것을 다 주지 못하고 전세 받은 것 중에서 30,000원을 빌려주고 빨리 갚으라고 당부하고 헤어졌을 뿐 여정

남이 학생 데모에 관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결코, 4.3일 데모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도 없고 데모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 제16항의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합 190.000원을 유진곤으로부터 학생데모자금 조로 제공받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1974.1월 말경 또 동년 2월 중순 각각 50.000원씩 집수리비 조로 유진곤으로부터 빌렸던 것이며 동년 3월 초순에 40.000원 동년 3월말 50.000원을 항소인의 처의 치아치료비 조로 빌린 것입니다.

#### 15. 공소 제 18항의 반론

1974.4.5. 광화문 귀로다방에서 여정남으로부터 조직정비나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민 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16. 공소 제 19항에 대한 반론

본인은 민청학련의 유인물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수병에게 준 사실뿐 아무런 보고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정남으로부터 하등의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실도 없는데 본인은 무엇을 보고한단 말씀입니다?

#### 17. 공소 제 22항에 대한 반론

본 항소인은 제 2선의 학생데모조직이나 주동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으며 여정남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은 집에 갔다와서 갚아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본인은 빨리 갚아달라고 하며 4.0000원을 빌려준 것뿐입니다.

#### 18. 공소 제 23항에 대한 반론

1974.4.17. 19:00경 치술령 주점에서 이수병의 생일 축하를 한다고 김종 대, 유진곤, 이수병, 본 항소인 등 4인이 모여 술을 마시고 취중에 또 술집을 옮겨가며 속칭 2차 3차로 거듭 마셔 술이 취하도록 놀았을 뿐 아무런 논의나 긴급조치 비방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항소인 등이 술을 마신 주점은 그렇게 은밀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조용한 주점도 아닙니다.

#### 19. 공소 제 20 및 21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 각하!

이상과 같이 진술하옵는 바 본 항소인이 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옵은 본

인의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항소인이 원하옵은 사실 그대로를 밝혀 공명 정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항소인이 인간적인 의리상 신고의무를 이행치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한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길을 열어 주시옵기 양원하오며 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나이다. 끝.

1974. 8. 10

위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항소인 金鏞元

입회교도보 김남국

####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김 용 원  
위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윤 의 준

위 피고인에 대한 긴급조치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개진함

### 아 래

제一 점 원심판결은 사실오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1. 판결사실 1내지 14, 18, 19, 20, 21, 23 항에 대하여 일반기록을 정  
사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및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사법경찰관 및 검찰관에게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조서에  
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 진술한 기재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공정  
에서는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 일관하였음은 원심공판조서에 명백히  
기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계있는 상피고인 이수병, 황현  
승, 이창복도 원심공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음도  
원심공판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심문조서작성 시 피의사실을 전부 시인하였고 검  
찰관이 심문조서 작성 시에도 역시 시인,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공  
정에서 전적으로 부인한 이유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작성 시 심한 강압과  
고문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수사관이 피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압적으로 심문하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하여 작성된 조사관의 일방적  
작성에 의한 심문조서였으며 검찰관이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고문은 없  
었다 할지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문조서 기재내용을 부인하면 다시  
사법경찰관에 되돌려보내 재조사를 하게 되므로 하는 수없이 본의 아닌

시인, 진술을 하였다고 원심공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본 건 모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일치하게 원심공정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보  
아도 피고인의 원심공정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단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원심공정서 전 피고인을 일괄 심리하지 않  
고 개개 피고인을 분리 심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상호간에 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듣고 따라서 같이 진술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연관있는 상피고인 이수병, 황현승, 이  
창복도 원심공정서 부인, 진술하는 이유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증거 조사시 위에서 말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찰  
관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피고인의 자술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  
어 증거로 함께 부동의하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을 믿어야 옳은 것인가.

공판중심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마땅히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안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전부를 인  
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  
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증인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존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함으  
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 원심은 파기시정되  
어야 할 것이다.

판시 사실 15, 16, 22에 대하여 원심판시사실 15, 16, 22에 제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 외 여정남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원심공정  
에서도 피고인이 시인하였으나 다만 제공한 목적이 원심 판시와 같이 거사  
자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친구지간의 정의로서 여정남이 돈이 필요하  
니 차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일 반환 받을 확인하에 빌려준 것이지  
거사자금으로 제공한 것은 절대 아님은 피고인이 원심공정에서 진술한 바  
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하였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파기 시정되어 할 것이다.

반국가단체 구성이라는 판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 피고인 등과 동숙  
또는 같은 교사직에 있던 관계로 자주 접촉하였을 뿐이며 목적의식 없었던  
점으로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함도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二점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설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소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나태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과중가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은 과거 좌익계열과 혁신계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한 경력이 전무하다. 이점 타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순수성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단 1964년 인혁당에 가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난 것을 보아도 당시의 혐의가 아주 경미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일체 정치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교직자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10여 년간 교사로 봉직하면서 아무 사고없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하여 교육계에 공헌한바 지대합니다.

셋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를 솔직하게 시인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심문 반성하였다는 법정진술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넷째.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사상에 물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은 어느 모로보나 단언할 수 있는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피고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버린다면 그 결과가 피고인 자신이나 국가적 견지에서도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상 여러 정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과중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과기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974. 8.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윤의준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74 비고군형항제15호

## 항 소 이 유 서

한국민족민주당 대구지부 주최로 개최되는 등산회에 참석한 항소인 송상진

본 적 경북 [REDACTED]

주 소 대구시 [REDACTED]

직업 양봉업

성명 송상진

생년월일 1928. 10. 30

죄명 본피고인은 1974. 7.1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4호등 위반죄로 징역상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 다 음

공소사실 전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피고인은 평소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70. 8. 15 등산회를 조직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상기 목적으로 등산회를 조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피고인은 대구에서 약 24Km 떨어진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두동(부인사)에서 양봉업을 하는데 그곳에 4, 5천 되는 사람들이 등산을 왔다면서 코스를 동화사를 거쳐 대구까지 기로를 정했다기에 본 피고인은 양봉장에서 동화사까지의 산길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피고인은 양봉장으로 되돌아왔을 뿐인데 이 등산은 것을 본피고인이 용공혁신계의 규합을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까지 과잉추리해석이란 전무후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그 누구 한사람도 정치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공해로부터 산소를 담뿍 마시는데 또 맑은 냇물, 기묘히 생긴 나무들에 흘려서 정신을 잊을 정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상피고인 전재권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후로는 본 피고인은 전혀 바빠서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단순한 길 안내가 오늘에 와서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국가건설의 모의조직이란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억지은 모해인 것입니다.

### 공소사실1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피고인은 공소사실1에 대하여는 이번 조사차 처음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상피고인 하재완가에서 동인과 공소외 이재문과 본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회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부를 폭력 혁명으로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국가건설 운운이라고 공소장에 쓰여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라면 그들은 몽유병환자이었거나, 미치광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대한민국의 국민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지 30년, 가진 풍상 속에서 자라왔으면 반공을 국시로 하여 싸워 공산주의에 이겨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석진 곳에서 폭력 혁명, 정부 전복 등 불순한 망언을 하겠습니까

둘째로 위축된 혁신계 인사를 제규합하여 조직화 시킬려고 했다는데 오늘날까지 본피고인은 혁신계를 제규합 조직화 시킨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피고인 여정남을 보호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지상 공고해서 가정 교사로 채용 입주 시켰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남이란 사람은 이번 조사 차 처음으로 본 사람이 옵습니다. 이것은 본피고인이 하나님 앞에서 맹서 하오며 사실에 틀림이 있을 때는 어떤 가혹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 공소사실 2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피고인을 1970. 8 상피고인 하재완가에서 동인과 상피고인 여정남, 공소외 이재문 비밀지하조직체 인혁당을 재건하여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가 급선된 감이 나타나고 사실을 외면하고 형식과 요식 위주로 억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① 상기한 상피고인 여정남은 전혀 지면이 없는 사람인데 함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하니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② 상기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 ③ 본피고인의 변호인이 상피고인 여정남을 증인으로 채택 신청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이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본피고인으로서는 치명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④ 상기 공소사실2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중정 지하실에서 받았음에도 그 서두에 구치소에서 진술한다고 쓰여있습니다. 1974. 6. 8

⑤ 상기진술서는 수사관의 공포와 억압으로서 지시에 따라 읽어주는 그대로 받아쓰기를 시켜 서명 무인케 했습니다.

⑥ 피고인 서도원, 상피고인 도예종을 지도 위원으로 추대한다고 했다는 데 이들의 집이 대구에 거주하는 수시로 맛날 수 있는 사람들이온데 번거롭게 추대한다라는 말을 던져놓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하겠습니다.

⑦ 인혁당재건이란 어불성설이다. 이미 1964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을 받고 물의를 야기케 한 세상을 아연케한 것인데 그 몸서리치는 인혁당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를 자초하는 길음으로 어리석은 짓은 그 누구도 재다시 저지를 수 없다.

⑧ 지하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해관계가 집약 되야 함에도 그것이 아니고 모험적이고 공포만주는 당명이다.

⑨ 1964 인혁당이란 고문에 의한 형벌의 자국만이 남아있는 이 무서운 당명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느 세계정당사에도 보지 못할 웃음거리이옵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정당을 재건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모해요 억지입니다.

⑩ 1970년에 인혁당재건 회합을 했다는데 그후로는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했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다. 이같이 상기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진술서의 기재부터가 임의성을 잊어버린 공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하겠습니다.

### 공소사실3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1972, 2~4월이간에 본피고인 자택에서 05:00~06:30과 17:00~18:30 2회 반복 평양 북괴방송에서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문을 청취하여 노트에 필기 후 상피고인 하재완에게 제공해서 정리케 했다고 한 공소내용이온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피고인이 3월 중순경 시골 양봉장에서 양봉 관리를 끝내고 대구로 돌아와서 상피고인 하재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북괴가 당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서라면서 라디오 청취 기록을 해보는데 어떤 선전을 하는지 참고로 청취수록한다는 지를 이야

기하고 그 당시 상피고인 하재완가에 시골 손님이 왔음으로 그날 저녁은 본 피고인에게 수고 좀 해달라기에 그 라디오를 갖고 그 회간 청취 수록 한 것입니다. (압수품 노-트 쪽각 4, 5개) 그 이후로는 노-트에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오늘날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한 노-트도 이번 취조 때 처음 봤습니다.

② 사업총화 보고문 중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하 내용에 대해서 본 피고인이 이를 지령과업으로 삼았다는 공소 내용이온데 상기한 바와 같이 짧은 몇 부분을 청취수록 해준 것이지 상피고인 하재완에게 정리 편집하라고 시킨 사실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내용과 같은 정치 선전은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이옵고 해방 후 오늘날까지 되풀이하는 선전이온데 그것이 본 피고인의 지령과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무도 혹심한 해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혹 지령과업을 삼을 만한 것이라면 특별한 내용을 담은 구체성을 띄운 것이어야 하지 않나 보겠는데 상투적인 선전을 본피고인의 지령문이었다고 인식키에는 너무도 막연한 논리의 비약이요 과잉 추리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오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 피고인의 사상의 결백성을 주장합니다.

#### 공소사실 4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 12 상피고인 여정남을 서울로 파견하여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조직활동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동 여정남의 활동자금을 만들어 보라는 상피고인 하재완의 제의를 받았다는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상피고인 하재완은 본 피고인의 가정생활의 빈곤한 형편을 알고 있고 아이들의 학비, 생활비 등에 허덕이는 상태를 알만셔 이와 같은 제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라면 모르대 자기 자신의 생활마저 보장 못하는 본 피고인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근한 것입니다.

#### 공소사실 5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1973. 12. 20경 본 피고인이 상피고인 전재권을 찾아가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 데모를 선도로 일반 민중의 유혈 폭력 혁명의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는데 본 피고인으로서는 꿈에도 이런 경거망동한 말은 해본 일이 없으며 이것은 마치 정신착란증을 일으킨 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옵니다.

② 언론계, 종교계, 재야인사 등은 스스로 그들이 서명 날인 운동을 벌이려고 한 것이며 또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되자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본 피고인의 세력인 것처럼 한 것은 망언입니다.

③ 유류파동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석유 생산이 안되는 국가는 전세계가 다같이 망하게 되는 원료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피고인은 상피고인 이태환과 공익사(상공부인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해물질인 패유로서 제정제하여 화학분해하여 공장연료인 방카C유를 만들고 부산물인 화공약품, 농약품 등을 제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정부의 비난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④ 공산 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에 참여시켜 그 구성원으로 포섭케 했다고 했는데 전시한 바와 같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나 아니하였나 하는데 대해서는 상피고인 전재권이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모조설이 옵니다.

⑤ 또 지도위원의 입장에서 거사성공을 위하여 그 활동자금을 내라고 요구하여 금 50.000원을 수취했다는데, 여기서 본 바 구성원 포섭으로부터 지도위원자격까지 이야기가 되었다하니 이 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비논리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은 1973년도 겨울부터 1974. 2까지는 대구시 대신동 근처에서 매일같이 살아왔습니다. 화공약품장사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있는 미천을 다 구입하고 나니 본피고인의 장남이 경북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입학금마저 낼 수 없는 지경이라 상피고인 전재권에게 부탁하여 금 50.000원 정도를 빌려 입학금 25.000여원을 때어서 상피고인 전재권의 점포점원에게 부탁해서 납금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본 피고인이 가지고 가서 쌀 1가마를 쌓습니다. 이 사실이 정부전복 자금이란 엄청난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 금 30.000원을 상 피고인 하재완에게 제공했다한 사실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공소사실 6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태환과는 동향인으로서 1965년 경 본피고인이 개간사업을 하는데 측량 및 서류구매를 부탁하러가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지면케 된 사람입니다. 상피고인 이태환과는 다년간 서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쓰기도 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처럼 정치적인 발언

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73. 12 ~ 1974. 2 사이는 전시한 바와 같이 회사 설립관계로 그런 헛된 소리는 지꺼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피고인 이태환의 친구인 화공계에 권위인 이태봉씨와 항상 같아서 이야기되었는데 정부전복의 모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아연실색할 일이옵니다. 이태봉씨를 증인으로 불러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시한 상피고인 전재권과 같이 여기서도 인혁당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구성원으로 포섭했다하니 이는 전혀 무근한 일이옵니다. 그리고 이같은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데모의 활동자금으로 금 50.000원을 수주했다고하나 이것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된 것이지 사실 이일은 무근한 사실이옵니다.

#### 공소사실 7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피고인이 1974. 3 상피고인 전재권에게 전시와 같이 설명하고 금 10.000원을 요구했어 수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피고인 전재권도 정신 없는 사람이지 전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 학생총연맹의 유인물 1매를 재시하면서 자금 1.000만원을 투입하여 반정부학생데모를 조종한다는 말은 낭설이요 터무니없는 날조된 말이옵니다. 본피고인은 전연 그런 낭설을 퍼뜨린 사실이 없습니다.

#### 공소사실 8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 4. 22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은 23일이옵니다. 본 피고인이 전시한 바와 같이 상피고인 전재권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또 상피고인 여성남을 서울로 파견해서 전국민주학생총연맹을 배후에서 했다느니하는 말은 전혀 말해본 일이 없으며 다만 본피고인이 피신케 된 동기는 동년 4. 22저녁 8시경 아우가 경영하는 신천동(양곡소매상)집에서 익 23일 양봉장으로 출발예정하고 그의 준비물을 다 챙겨서 막 귀가 할려는데 상점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면서 잡으러 왔다기에 겁에 질려 영접결에 뒷문으로 피했습니다. 익일 오전에 본 피고인은 경북경찰국 정보분실에 어떤 사유로 인지 문의코 자수를 생각했으나 망설이다 정류장에서 한일산업석축부를 맡은 이사장을 만나 가정불화를 평계삼아 이야기했더니 취업해 달라는 요청으로 경북선산군 구미 공업단지에서 물품 검수하는 일을 맡아 오다 4. 28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위반이나 전국 민주학생총연맹에 본피고인이 관련이 있어 피신한 것이 아니옵니다. 겁에 질려

몸서리치는 과거가 본 피고인의 뇌리를 치는 것이 있어 이 순간에 신체적 고통을 면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시켰고 사실이 없으니 그 후는 자연 무사해질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전일 상피고인 서도원, 동 도예종, 동 하재완이 연행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신치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추리될 것이옵니다. 4. 23 아침 6시경 상피고인 전재권에게 금 3.000원을 빌려간 사실은 있었지만 공소내용처럼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소장에 대한 항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수사는 오로지 본 피고인의 의사로 물어 서가 아니고 청사진에 본을 박어 놓고 그리고 강요 필기 무인케 해서 사형까지 준다는 것은 이 얼마나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허수아비가 되어 그 시간과 장황만 면하기에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양심으로 호소합니다. 오로지 국법의 존엄이 반드시 본 피고인의 양심이 울어난 사실을 밝혀주실 것을 신뢰로서 마지하겠습니다.

1974. 8. 12.

항소인 송상진

#### 위 무인이 본인의 무인임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교도보 김인호

##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송상진

위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 다 음

원심 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중 피고인은 한가지 사실(공소사실 중 3)만을 시인(목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고 자필진술서를 써서 제출한바 있습니다마는 위 모든 것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전체 줄거리를 훑어 보면 피고인은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사회건설 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하여 공산비밀 지하조직의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공소의 여성남을 뒤에서 조종사수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케 하고 학생데모 민중봉기 등을 유발케 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코자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동 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공소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어떠한 사실이 과연 극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항소심 심판관 여러분께서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량한 국민으로서 다시 재생의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4. 8.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

##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Redacted]

## 항 소 이 유 서

항소인 우 홍 선

본 적 경남 [REDACTED]  
주 소 서울 [REDACTED]  
성 명 우 홍 선(禹 洪 善)

생년월일 1930. 3. 6.

직업 한국골드스탬프(株) 상무 이사

죄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上 被告人은 1974. 7.11 대통령 긴급조치등 위반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이 있어 항소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명철하신 재판장님

본인은 북괴공산집단에 의한 그 피해자중의 한사람이옵니다.

북괴의 6.25의 남침으로 학업 중 종군하여 화천전방 6사단 19연대 1선 보병 소대장으로 무수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반불구자로 후송이 되어 생명을 구했습니다만 생혈이 심하여 전신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25로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종군을 하게 되어 학업을 중단한 채 그 후 기회를 잃어 대학의 공부를 하지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배움의 시기와 건강을 저에게서 뺏어간 북괴는 저의 철천지 원수이옵니다. 어찌 추호라도 그 북괴를 고무찬양하거나 북괴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의사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불행하게도 4.19이후 군동기생인 고향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혁신계와 가까이 하게 되어 인민혁명당사건에 연관된 관계로 이번엔 또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불행한 처지에서 빠져나와 재생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인자하신 재판장님

본인에게는 노모가 계시옵고 4남매의 자식과 처가 있사옵니다. 저 한사람의 불행이 온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게 되며 특히 네 자식은 앞으로 고아가 될지 불량소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여지는 듯한 고통을 매일 밤 되풀이 겪고 있습니다. 건전한 한 가정은 민주국가의 기초가 될 것이 온족 저와 저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주시어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행복하고 건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전경하옵는 재판장님

살림에는 쥐꼬리도 소용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온 즉 우매한 본인이나마 민족중앙의 역사창달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1974. 8. 12

우 홍 선

이모인을 증명함

입회 교도보 송일남

##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우홍선

위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펴는 바입니다.

### 다 음

一.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원심판결은 1973. 10초순 11:00경 서울중구 충무로 1가 소재 “지” 다방에서 상피고인 이수병 동 전창일 동 이성재 등과 회합하고 동소에서 이수병이가 7.4 공동성명이후 혁신정당의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 같으니 동지들의 힘을 모아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투쟁할 시기가 온 것이니 우리 혁신계 동지들은 흩어진 세력을 하루속히 규합하여 과거 인혁당과 같은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여 투쟁대열을 정비하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제의하자 이에 전원이 찬동하고 공산비밀지하조직을 재건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서 우리의 조직은 서울지도부로 한다. 동 조직은 4인 지도부에서 조종 운영한다는 등 각각 토의하여 합의 결정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있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 우홍선에 대한 검찰관의 피의자 심문조서, 진술조서, 상 피고인등의 검찰관의 피의자 심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용한 바 있으나 피고인 및 상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조서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을 부인하고 증거도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만큼 증거 없이 또는 채증 법칙을 어긴 유죄판결이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등이 1973. 12경부터 1974. 2경까지 전후 4회에 걸

쳐 4인 지도부인 상피고인 이수병 동 전창일 동 이성재 등 4인이 회합하고 우리는 데모를 지도하여 전국학생연합체를 구성, 일제히 봉기시키고 우리 조직을 동원 민중 봉기화하여 정부중앙기관을 강점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정부의 유신헌법과 1.8 긴급조치 등은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니 이를 철폐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복되면 학생, 혁신계, 종교인, 지식인등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북괴에 영합하여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촉진협의회에 위장 가입하여 행동하자고 재차 제의하여 이를 각각 토의하여 합의 결정하고 각자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한편 내란을 음모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1974. 4. 3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자 전시 이수병이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경북에서 유능한 학생운동 경험자 1명을 데려다가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학원 조직을 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 등은 동인 등을 통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은 모든 사실의 전부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이것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증거가 없거나 채증 법칙을 어긴 유죄판결이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二.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가사백보를 양보하여 유죄가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나 국가 안보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육군대위로서 6.25때 조국방위를 위하여 일선에서 용전하여 부상까지 입은 퇴역장교요, 가정에 있어서는 성실한 남편이요, 인자한 아버지로서 임해왔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해 온 이 마당에 사형이란 너무나 가혹한 것인 만큼 재심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 국가답게 관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1974. 8. 14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길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여 정 남

(서울구치소 재감중)

본 적 경북 대구시 [REDACTED]

주 소 경북 대구시 [REDACTED]

성 명 여 정 남

생년월일 1944년 5월 7일 생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 항소 요지

상기명 피고인은 1974년 7월 13일 비상 보통 군법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죄로 사형을 언도 받고 불복 항소한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 항소 내용

#### 一. 1심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성 불공정성

② 불과 한달 미만의 기간에 무려 32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방대한 기록을 심리하여 언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처리한 관계로 충분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라 짧은 기간 중에 기록 열람도 옳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 없는 정확한 판단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귀중한 한 생명을 구형에까지 언도하면서 충분한 심리조차 않았다는 오점은 법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④ 군법 회의법 345조 ②항에 의해 피고인 변호인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진술할 기회를 옳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검찰관

직접 심문에서 “너 같은 놈 이력서 내봐도 취직시켜주는 사람 없지”라는 등 흥분과 인신공격 일변도의 고함 소리 위주의 심문에 대해 제기된 공소 사실의 각 항목을 설명하려고 하면 법무사가 시간 관계상 하고싶은 말은 변호인 반대 심문에 하라고 하며 단지 한마디 묻는 말에 “예, 아니오” 답변만 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공판의 진행 상태에 따라 공판일자가 정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오늘은 누구누구까지 몇 명 반대심문을 마쳐야 되니 간단히 해달라는 재판장과 법무사의 쟁취 하에 미리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느라고 변호인 반대 심문도 형식적으로 끝났고 장황한 검찰관 의견 진술과 구형 후 시간이 없다하여 변호인 변론 시간조차도 제한되고 특히 본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변론 도중 휴정 후 개정할 때 재판장께서 긴급조치 1호 선포 후 당 법정에서는 변호인들의 발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해달라는 수차의 당부가 있은 관계로 각 피고인 공히 제한 당했고 더군다나 본 피고인의 경우 1971년 대구 지법에 사건 계류 중이던 반공법 위반 사건이 군법 회의로 이관 병합 심리된 관계로 할말이 많았음에도 진술도중 제지당해 할 말을 다하지 못한 불공정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㊂ 정보부에서 시종일관 1심 재판에 관여했기 때문에 각 피고인 공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특히 본 피고인의 경우 ‘긴급조치하인데 법이 무슨 필요냐 정보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없다 어느 정도는 시인해야지 안 그러면 재판도중이라도 끌어내다 박살낸다’는 협박을 수차 당한 일이 있는 데다 정보부 차량의 에스코트 아래 출정하여 녹음기가 장치된 법정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정보부 직원의 주시를 받으며 재판을 받은 관계로 그 당시 장기간에 걸친 취조과정 중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전기, 물고문, 심한 매질 등으로 인한 구도의 쇠약한 몸으로 주사를 맞아가며 재판에 임했음으로 고문에 대한 공포감과 법정 분위기 위압감에 위축되어 상피고인 서도원, 하재완 등과 실제로 만난 일이 없는 날짜에 만났다고 되어 있는 공소사실 조차도 주도의 위축감 속에서 엉겁결에 시인한 허위 진술도 있었습니다.

㊃ 군법 회의법 340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나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설명력을 다툼에 필요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심문을 무조건 기각한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본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소환하기 어려운 처지도 아니고 같은 구치소의 지붕 밑에서 기거하고 있

어 소환에 응하였으며 더구나 검찰관이 신청한 증인 신청은 많은 인원이 기각되지 않고 전원 채택되었다는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음을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검찰관이 신청한 증언심문을 피고인의 출정 없이 하는데 대한 변호인단의 이의 신청이 무조건 기각되고 변호인 반대 심문 없이 끝낸 증인 심문을 군법회의법 341조의 권리에 의해 변호인단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도 무조건 기각했음을 군법회의법 자체를 부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二. 심문, 방송 등 각종 매스콤을 통해 앞당겨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건 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시종일관 조작 강제 진술케한 각종기록의 허위성이 명백하게 들어 났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것은 헌법 10조 ②항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의 유린은 물론이고 증거재판주의 의제자백의 유죄증거 불인정 진술의 임의성이 없을 때의 증거 불인정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서류 또는 진술이 진정한 것이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군법회의법 350, 352, 361조 ①, ②항 362조 ①항 등에 위배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위 조작된 기록의 양이 원체 많으므로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 할수 없어 간단한 실제 예만을 들고 2심 공판에서 공소장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겠습니다.

① 1심 공판정에서 비로소 밝혀졌지만 나이가 30이 넘어 일어를 “가다 가나”, “하라가나” 부터 배운다는 생각에 동심으로 돌아가 수강신청 할 때 장난 삼아 기재한 여익환 이란 본 피고인의 儿名까지도 그동안 시종일관 가명으로 둔갑되어 범죄구성의 줄거리가 되어야 했고 어디 있는지 구경 조차 못한 중부경찰서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취조 받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문구치소에서 취조를 했다고 쓰라고 해도 부르는 대로 혼미한 정신 상태 속에서 써야만 했던 이 한가지 사실만 해도 정보부에서의 각종 진술서나 심문조서 진술조서 등의 허위성이 들어 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5월 16일부터 시작된 검찰 진술도 결코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정보부에서 이때까지 쓴 진술서가 복잡해서 정리하기가 힘들어 다시 하나 종합해서 써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리 요지를 정리해 놓았다면서 불러 준 것을 받아쓰는 형식이 되었고 이때까지의 조작진술에 또 다시 본 피고인조차도 보지도 못한 것

을 보았다고 진술해야만 했던 북괴 노동당 사업총화 보고문을 하재완의 집에서 정만진, 임구호에게 각각 제공 탐독케 했다는 조작 사실이 “당자들이 시인하고 있는데 너만 부인해서 너만 유포지 무슨 소용 있느냐”는 공갈 협박과 심한 매질에 시인해야만 했고 오후 5시경이 되자 어디로 가는지 시간이 됐다면서 정보부 6국 6계장 윤종원이 직접 진술서 작성하는 것을 중간부분에서 매듭짓고 부인케 한 후 지참한 후 본인을 데리고 서울 구치소에 도착 검찰관 앞으로 인도. 본 피고인이 당일 쓴 진술서가 검찰관에게 제공되고 둘이서 이 진술서는 너의 글씨가 틀림없고 내용도 맞지 하며 유포되는 바람에 연일 계속된 취조에 기진맥진한 본 피고인은 부인할 기력조차 없어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윤종원이 잠깐 있다 돌아간 후 이 진술서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으나 대뜸 무슨 개수작이냐 그렇게 부인 할려면 다시 정보부로 보낼 테니 정신을 개조해 가지고 오라면서 유포 공갈 협박을 하며 피로에 지쳐 의사에 기대어 말도 하기 귀찮고 어이가 없어하는 본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보부의 의견서(본인의 진술서와 내용이 꼭 같음)를 보며 검찰관이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부르면 서기가 받아쓰는 형태로 했고 정보부의 의견서에 의해 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또한 다른 피고인의 의견서 중 본인과 관련되는 부분을 무조건 종합해서 조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정보부에서의 조작보다 더욱 엄청난 조작이 검찰 취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철, 유인태 등과의 관련 사실에서 화염병 제조, 각목 사용지시라느니 민족지도부 구성,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건설 등 얼토당토 않은 말을 관련 피고들이 시인했으니 너도 시인해야 한다면서 조서상에 추가로 나열했으며 하재완과의 관련 사실에서도 있지도 않은 자금 제목 등이 새로 삽입되는 넌센스를 빚었던 것입니다. 형식상의 취조 일방적인 조서 작성도 밤 10시가 되자 내일 계속하자면서 조서에 부인을 요구하기에 거절했더니 정보부에 가면 안찍을 수 없겠지 하며 정보부에 본 피고인을 보낼려고 하기에 본 피고인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고 허탈한 심정으로 부인을 해주었습니다.

¶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행된 3회 심문조서를 5월 18일 밤 끝내며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취조는 완전히 끝났으니 푹 쉬며 건강이나 회복 하시오”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던 말과는 달리 계획이 바뀌어졌는지 5월 25일부터 정보부 지하실에서 인민 혁명당 재건을 위한 지도부 구성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되고 본인에게는 학원 담당책 학원

조직책 등의 벼락 감투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심지어 5월 28일의 진술서는 날짜까지도 5월 24일로 바꾸어 쓰게 했으며 5월 30일에는 미리 마련된 진술 조서에 의거 진술서를 강제 작성케 했고 날짜는 역시 5월 25일로 쓰게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5월 27일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날짜의 조작도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정해진 일정과 시간에 허겁지겁 쫓기어 공소장대로 진술서를 쓰게 하고 공소장 내용대로 심문조서를 만든 삼척동자가 보아도 조작 사실이 당장 들어날 어리석은 행위도 연출되었습니다. 기록장으로는 6월 7일부터 6월 8일에 걸쳐 검찰에서의 진술서로 첨부되어 있는 것을 쓰게 했는바 진술서가 중복된 것이 많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 총정리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명목 하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시인했으니 사실이 아니냐 하며 5월 하순경 윤곽만을 조작해 놓았던 인혁당 지도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각색한 공소장 3, 4, 5 항의 사실과 10, 11, 12, 13, 22, 30, 31 항 등의 허위 사실이 등장된 진술서를 고문과 강요에 못 이겨 밤을 새워 가며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작업이 끝난 즉시 정보부 3층에 임시로 마련된 검찰관 취조실로 가서 조사관에 의해 진술서가 검찰관에게 제공되고 형식적인 검찰 심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① 본 피고인의 진술서에 의거 검찰에서의 4, 5회 심문조서가 작성되고 있을 때, 본 피고인의 공소장 부분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공소장 부분의 구치소 접수인이 6월 8일자임)되었고 1심 판결 시 유죄증거로 인정한 6월 8일 자 진술서와 인쇄하여 두툼한 책자로 만들어진 본 피고인의 공소장 부분 내용이 1항부터 62항까지의 사실이 항목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으며 진술서에는 모두 사실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용부분, 전시 공소사실 상피고인 등 공소장 기술상 필요한 용어만 빼졌을 뿐 문장내용까지 꼭 같은 귀신이 꼭할 사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단지 내용 중 틀리는 부분이라고는 4항 30항의 사실이 약간 틀릴 뿐인데 4항은 동 송상진 동 이재문 동 하재완 등 3인으로 하여금이 송상진 동 이재완 동 하재완 등 3인으로 하여금 송상진 이재문 하재완 등 3인과 같이 경북 지도부를 구성한 것으로 표현되고 그 외 문장 내용은 꼭 같은데 그 까닭은 공소장 4항을 주의해 읽지 않으면 본 피고인도 같이 참석한 것 같이 오인될 수도 있는 난해한 문장 구성이라서 부르는 사람이 잘못 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30항도 1974년 3월 7일 21시경..... 이철 유인태 정문화 나병식 서중서 등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불러주다가 “참 너는 이철, 유인태 외 딴 학생들은 모르지” 하

며 “이건 이상한데” 하더니 한참 읽어보더니 본인이 사전에 이철, 유인태에게 지시하여 3월 7일 모임을 가지게 한 것으로 내용을 바꾸었을 뿐 그 외 딴 내용은 꼭 같습니다.

② 6월 8일자 검찰 심문 조서는 3, 4, 5항과 10, 11, 12, 13항만이 진술서와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을 뿐 딴 사실은 진술서대로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술서가 본인의 자의로 쓴 것이 아님을 말하고 이 진술서 상에 당장 거짓말이 들어나지 않느냐 송상진은 그 당시 본인과 알지도 못하는데 같이 지도부를 구성한 것으로 되었고 서도원, 하재완과는 이렇게 자주 만난 일도 없는데 만났다고 되었고 진술서 내용대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도원, 하재완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그동안 왕래가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8월에 있었던 일을 1월 달에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조작을 해도 좀 똑똑히 하라고 하니 순간 낭패한 기색으로 진술서를 보더니 무심결에 하는 말이 “좋다 잘못 불렀다 공소사실과 틀리게 돼있군 그래 “하더니 갑자기 혐악한 표정으로 안색을 바꾸며 하재완이가 이재문, 송상진과 셋이서 결정하고 그 당시 불참한 너에게 나중에 통고하고 너도 그것을 승낙했다고 하던데 너도 승낙했으니 같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호통을 치며 조작을 해도 좀 똑똑히 하라는 본인의 말이 납득이 되던지 지도부 구성은 본인이 시인하면서도 1월 달에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식으로 본인의 반박하는 말을 인용하여 그것을 그럴듯하게 조작 조서에 기록케 했으며 10, 11, 12, 13항의 사실에서는 이 부분은 진술서 조서를 쓸 때마다 조작이 제일 많이 가해진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혁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이 어린 후배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야 되겠느냐고 항의하니 검찰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임구호는 노동당 전당 대회 보고문이 적힌 노트를 보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어 조직의 일원으로 단정되는 것이고 딴 애들은 너와 수차 만난 사실이 있어 반공법에 위반된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후배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득히 여겨 좀 봐준다고 하면서 5월 달에 한 검찰에서의 심문조서를 참고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하는 듯 하면서도 범죄사실이 성립되도록 조작해 부르면 서기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고 문기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절밥을 먹으며 성장한 내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으니 꿈만 같고 정말 억울하기 짹이 없다고 하니 그

최후 진술조차도 본 피고인이 정말 죄를 짓고 참회하는 형태로 조작 기록케 했고 이렇게 해야 군법회의 재판장이 참회 반성한 줄 알고 잘 봐 줄 것이다. 라는 등 시종일과 분통터지는 언동으로 일관했고 천편 일률적인 공갈 협박 속에서 심문조서에 무인을 찍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 1971년도의 반공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법상 국민 누구에게나 엄연히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유죄판결은 이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㊂ 1971년도 당시 이 사건을 수사 기소한 대구지검 이승빈 부장 검사께서 공관정에서의 선언문 반독재 구국선언문 중 반외세란 문구만 없었다 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반외세는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 이를 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님은 선언문 내용 중 그러한 문구나 의미가 한마디도 없고 선언문 전체의 구성논리로 보아 군국주의화되어 가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아내자는 뜻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공판 중 변호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1970년도 4.19때 전국학생연맹에서 발표한 백서 형식으로 된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당시 일간 신문들 요지를 기사화, 사상계 5월호, 민주전선에는 전재 됨)에 앞으로 학생운동의 방향은 반외세 반매판 운동으로 집약된다는 표현이 있고 그 외 그 당시 학생 운동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문헌들과 각종 토론대화나 잡지 등에 기고된 수많은 논문들의 경향에 거의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제와 경제 침략을 주제로 했었는데 유독 반독재 선언문 만이 유죄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위법 행위입니다.

㊃ 월남전에 대해 말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같이 월남 파병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나 월남군 보다도 용감하게 성공을 세우면서도 몇 배나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차별대우에 분격하여 그런 대우를 받을 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심정으로 비판한 것이고 당시 국내에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고 서민호 선생이 월남 파병을 반대하며 청부전쟁 짚은이들의 피를 팔아 정권 명맥 유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었고 지식인층에서도 민족적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파병을 계속한 것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그 타개책으로 할 수 없이 수치를 무릅쓰고 파병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서구라파

등 우방 제국에서도 월남 파병 문제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또한 검찰 조서에서 북괴나 월맹을 외국이라고 한 것은 사회학적인 면에서 국외의 통치 집단을 지칭할 때 흔히 상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다른 나라란 뜻에서 말한 것이지 결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인정한 정당한 법치국가란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이 점은 검찰조서에서도 불법집단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는 소련,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는 강의를 들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외국의 예와 비교해보자면 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지 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이나 소련 중국 동구라파 등의 기후, 풍물 등을 배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㊄ 평화 통일 문제는 이미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능동적으로 남북조절 위원회,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에 범죄사실이 될 수 없고 북괴와의 대결에서 민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민주정치가 실시되는 길만이 민주적 통일을 성취하는 첨경임을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㊅ 교련 예비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교련 예비군 등을 이용 학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탄압에 수단으로 한 것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㊆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중소기업가, 종교인에게 요구한다는 문구는 본 피고인이 집필할 때 전국민으로 썼다가 그렇게 쓰면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선언문의 형식이라 글을 쓰는 사람의 욕심으로 멋을 내고 싶었고 또한 글을 한번 검토해보니 무기력하고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구국운동을 위해 지식인들에게 특별히 분발하자는 내용을 넣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빠지고 해서 사회의 전 계층을 나열하여 짧은 글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충족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사회과학 용어상으로나 각종 문헌으로는 사회 계층을 나타낼 때 노동자 농민, 소시민 순으로 쓰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그 외 양심적인 지식인, 중소기업가, 종교인 등 전사회 계층을 생각나는 대로 망라한 것입니다.

㊇ 선언문의 일반적인 특징상 과격하며 선동적이고 풍자적인 용어가 반독재 구국선언문에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존엄하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아래 사형언도를 받은 본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위와 같이 밝  
혀사오니 혁명하신 판단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74년 8월 13일

피고인 여정남 안  
위 무인은 본인의 것임을 증명함

교도보 김 성 용 인

## 비상 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귀하

74 고구려학제14호

항 소 이 유 서

위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항소 이유를 밝힙니다.

1974. 8. 14

##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한승현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 피고인 라병식, 김영일(“오적” 사건 부분 제외) 유근일, 이직  
형, 서경석, 여정남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용하고 각 공소 적용  
법조에 적힌 죄명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一. 그와 같은 원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다.

원판결이 자료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  
력이 없어 유죄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①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심문조서 및 각 심문조  
서 및 각 진술조서와 각 자필진술서는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이 각 그 성  
립을 인정하였으나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니 각 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별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이 증거법규상 뚜렷한 것이고

② 상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와 공소 외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및 진술조서,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진술조서, 위 사람들의 일부가 쓴 자필  
진술서 등은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증거로 함께 동의하지 않았으며

③ 그 중 수명법무사의 중인심문에 나타난 각 원진술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참여 및 반대심문권 행사 아래 진술한 중인들의  
진술내용은 한결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혐의와 같은 범죄 사실이 없  
었다는 것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기들의 조서나 진술서는 임의  
로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차 있다  
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의 각 조서 및 진술서는 원진술자에 의하  
여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밝혀졌으니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원판결이 내세우고 있는 수명법무사 작성의  
중인심문조서도 그 내용이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어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④ 하물며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참여조차 없는 가운데  
수명법무사의 심문이 강행되었으니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소송절차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심문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심문에 근거한 원진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조서나 진술서 또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 강행한 수명법무사의 중인심문조서 및 그들  
의 수사기관에서의 원진술까지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⑤ 그밖에 원판결이 열거하는 다른 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도 원심의  
판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二.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위반되는 것  
이다.

1. 설령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조서나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가운데 일부 공소사실과 부합될만한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법이라 할 것이고 (66. 2. 28. 대법원판결)

2. 달리 공동피고인의 진술이나 그밖에 보강증거가 없는 본 건에서 부  
자유와 기망유도에 기인한 자백이었다는 다툼이 뚜렷한 본 건에서 그  
자백을 그대로 믿은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55. 6. 10. 대법원판  
결)

3.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임의성 문제는 앞서 따겼으니 별론으로 치고라도) 법정진술 및 그 밖  
의 자료에 의하여 내용의 반증이 나와 있으면 마땅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반증의 유무에 대한 논쟁을 접어놓고 말한다해도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채증법칙은 없다」는 대법원판결 (66. 9. 27선고)에 비추어 본 건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며

三. 원판결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의 구성죄」와 형법상 내란  
죄 및 반공법상 「찬양고무 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1. 무릇 「반국가 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못박고 있듯이 정  
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만든 결사 또는 집단을 뜻하  
는 것이며 내란이라 함은 국토를 침절하거나 국현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현문

란」이라 함은 형법 제91조가 명시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본 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현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과 부정을 개탄하고 이의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과법한 학생데모를 기도하기 위하여 서로 모여서 논의하였던 점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이 소망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의 회복은 우리나라 현정질서의 궁극적 이념이요, 목표는 될지언정 반국가나 국헌문란에 문의될 여지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더구나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존재치 않는다. 적어도 「단체의 구성」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 골격이라도 갖추어져야만 할 것인데 학생 몇 사람이 모여서 학생운동에 관한 논의를 한 것만으로는 단체의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폭동을 기도한 사실은 더욱 없고 오직 학생데모를 논의하였을 뿐인 것이다.

4. 결국 원판결은 본건 피고인들이 기도한 데모의 성격에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담겨있었다는 점에 집착하여 현재의 상황아래서 시도되는 민주회복 운동 내지 반정부적 학생데모의 목적을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 혼동내지 동일시하여 위 두 목적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또한 대규모적인 학생데모를 감행하는 일이 곧 폭동과 동격의 물리적 사태라고 폭동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허물도 개재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6. 설령 학생데모가 일어났을 경우에 민중의 호응을 받아 폭동화된다고 가상에 가상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국헌문란의 폭동이 직접목적이 아니었는데 단지 과급효과로서 폭동이 예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것임으로 (68. 3. 5) 연쇄반응을 이유로 하여 학생데모를 내란요건으로서의 법률 폭동으로 사전에 예단함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반국가 단체의 구성죄 및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그릇해석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각 그 죄의 음모, 예비, 선동 등의 죄책을 인정한 원

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그리고 반공법 제4조 제 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행위라는 것은 최소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본건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비판적인 대화와 문귀를 썼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달리 그들에게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알기에 죽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국민기본권행사의 한계내의 언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현실비판적인 언동을 반국가단체의 동조행위로 본 것은 필경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 四.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3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백항에 달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증거설시에 있어서 누구에 대한 어느 사실을 어느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피고인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적용에 있어서도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어느 법조를 적용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과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라고 규정한 취지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정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밝힘은 물론이고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라는 뜻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증거가 되었고 특정된 판시 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 : 74. 7. 26.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

◎ 피고인 김영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중 당시 “五賊” 사건부분(서울형사지법 70고 22427호 사건)

### 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원판결이 들고 있는 유죄의 증거 중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오적” 시를 창작하여 사상계지에 발표케 하였다는 것뿐이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 동조할 의도로 그 시를 썼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며 달리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 검사작성의 부완혁, 김승균, 이현세, 정만기, 정옥표, 여석동 및 김성희 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심문조서 또한 그 내용을 보면 그 피고인의 의도나 작품의 내용이 결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임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고
3. 본건 “오적” 시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시(詩)안에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 강자의 횡포, 현실의 부조리상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서민을 대변하여 현실을 비판, 고발하는데 본의가 있을 뿐, 계급의식의 고취 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며 만일 부정한 계층, 부류에 대한 비판을 금지케 한다면 바로 그때 태도야말로 계급의식의 고취라 할 것이다.
4. 또한 “오적” 시에 담겨있는 정도의 사회 비판적 내용은 자유민주 체제하에서라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언론, 창작 등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행사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5. 설령 그 작품이 반국가단체의 선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 작품자체를 반국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반국가단체의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만으로 범의 없는 행위가 위법시 되거나 처벌된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를 저버린 반헌법적 논리이다.
6. 그 시(詩)속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부정부패와 부조리상이 바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작자의 의도를 도외시하고 창작의 소재로서 다른 현실의 맹점이 마치 피고인에 의하여 새로이 조작된 듯이 보고 문학화된 작품과 작자를 형사적 안목으로 죄책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7. 그 밖에 본건 “오적” 시를 용공작품으로 보아 반국가단체를 찬양 동조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서울형사 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오적” 詩는 결코 반국가 단체를 찬양 동조하는 작품이 아니며 작자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필경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죄의 판시를 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二.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앞서 라병식 등에 대한 항소이유중 제3항 법리 오해의 위법 주장 부분을 원용함.

### - 이 상 -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 선언 성명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해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완씨등 무고한 8인의 생명을 앗아간 소위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발생한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 희생자 8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사형장으로 끌고간 박정희가 그 목숨을 다한지도 20년이 흘렀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금까지도 이 잔혹하나 사법 학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음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우리의 반 민주적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이미 여러 학계와 언론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배후 조종하여 북과 연계된 체제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던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 순수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단체였음도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청학련 관련 인사들이 각계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여자로 존경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채 하루가 가기도 전에 재심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형장에서 억울하게 숨져가야 했던 인혁당 사건 희생자는 아직도 그 이름조차 거명되는 것이 불온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던 1975년, 독재 권력에 의해 묶여있던 국내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은 사건기록조차 보지 못한채 재판에 임하는 등 모든 절차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국제 법학자 협회는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된 날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불행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혁당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재심의 기회조차 빼앗은 채 고문과 조작을 통

해 죽음을 강요한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묻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 정부가 과거 부당한 권력이 자행한 악행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법치를 통해 진실의 빛을 비추어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기꺼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한 것도 바른 정치와 바른 역사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있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에 불행한 역사를 접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잘못된 역사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의 요구에 대해 현 정부는 자신의 뜻으로 자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 <선언 참여 주요 명단>

강신석(목사, 5.18특별법제정 범국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영구(변호사,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권오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 의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동완(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승오(신부)/ 김승훈(신부, 서울대교구 시흥동성당 주임)/ 김용수(한양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김창남(성공회대 교수)/ 김현(원불교총본부교정원 부원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충진(신부,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도강호(4월혁명회 상임의장)/ 두봉(주교, 前 천주교안동교구 교구장)/ 리영희(교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 문국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박기호(신부, 시흥4동성당 주임)/ 박순경(교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박용길(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박용수(우리말글연구회 이사장)/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총장)/ 박정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일(주교, 천주교마산교구 교구장)/ 박종렬(월간말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서경원(농민, 前 국회의원)/ 오수영(신부, 천주교부산교구 오순절평화의집)/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 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유현석(변호사, 경실련 대표)/ 윤공희(대주교, 천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계창(신부, 천주교대전교구 태평동성당 주임)/ 이기형(시인, 민족

문학작가회의 고문)/ 이돈명(변호사, 인혁당대책위 공동대표), 이성재(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대표)/ 이오덕(어린이 문학가)/ 이우정(민화협 상임대표, 평통사 상임대표)/ 이응석(신부, 천주교마산교구진동성당 주임)/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이창복(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이해학(목사,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장두석(민족생활의학회 회장)/ 장영달(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정범구(시사평론가)/ 정태춘(가수)/ 조성교(신부, 천주교인천교구용현5동성당)/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최기식(신부, 원주교구사회복지회 회장)/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용철(두리출판사 대표)/ 현기영(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호인수(신부, 천주교인천교구간석2동성당 주임) 홍근수(목사, 향립교회 담임) 등 사회 각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지난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여덟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슬 펴련 유신독재와 무자비한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오로지 진실규명과 민주주의를 간절히 염원하며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 왔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장기집권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당시 청년, 학생들의 거센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민청학련사건을 만들던 중 조작된 사건입니다. 박정희 장기집권과 민청학련 그리고 인혁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독재의 장기집권을 위해 저질러진 사법살인인 것입니다.

지난해 혈육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부모님들은 420일간의 목숨 건 국회 앞 농성투쟁으로 ‘의문사진상규명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을 통한 역사적인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에서 사망한 장석구 선생 사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기로 결정을 내렸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반독재 민주화투쟁들에 대해 연이어 민주화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죽음으로 항거한 모든 노력이 당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부 공식기관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습니다. 양대 위원회는 현재도 버젓이 살아있는 법들의 정치적 악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민주화운동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아직도 건재한 국가권력기관들의 고문과 조작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 규명으로 과거청산의 올바른 전례를 세워 나가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코 현행법의 테두리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권력기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양대 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화해의 역사적 소명을 당당하게 수행하길 바라며, 이에 수반되는 많은 현실적 제약들과 조건들을 넘어서 역사적 진실을 판정하는 기관으로서 역사적 임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2001.4. 9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 진정서

##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킴으로써 민주사회 구현 및 정착에 노력할 것으로 모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진정인들은 19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와 육군 보안사령부가 자행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구타,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당시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세력으로 조작된 소위 인혁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문은 펼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으며, 이들 중 8명은 이러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또 이를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져 결국 사형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들 8명을 포함하여 민청학련사건 피고 180명이 받았던 고문은 잠안재 우기, 부동자세 또는 앓은 자세로 세워두기, 마구잡이 구타, 뭉뚱이로 발바닥 때리기, 슬리퍼로 따귀 때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우고 누르기, 권총으로 위협하기, 통닭구이, 물고문, 고춧가루물 먹이기, 전기고문 등 갖은 악행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우홍선, 이수병 씨 등은 탈장, 협심증 등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이고,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뒤에도 고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송상진씨 등의 시신을 가족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멋대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남편들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던 김용원씨의 부인 유승옥씨, 전창일씨의 부인 임인영씨 등을 연행하여 남편이 공산주의자임

을 시인하라며 협박하였고, 사형 집행 후에도 여덟 사람의 유언을 ‘적화통일 만세’, ‘장례에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등으로 조작하는 등 인면수심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기회로 미루더라도 수사와 검사취조,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참혹한 인권유린은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저희 진정인들은 확신하는 바, 귀 위원회에서는 이를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현직에 있으면서 협박과 구타, 고문을 지시, 집행, 은폐, 방조한 혐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지시·집행한 혐의자들

- ① 중앙정보부 제 6국장 이용택, 대구분실 정보부원 손종덕 등  
중앙정보부 제 6국 수사관들
- ② 육군보안사령관 육군소장 김종환과 수사관 최일수 등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요원들

### 2. 검취 및 재판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은폐한 혐의자들

검사 문호철, 검사 이규명, 검사 최명부, 검사 송종의, 검사 강철선, 검사 백광현, 법무사 육군대령 이진우, 법무사 육군중령 김영범, 법무사 육군중령 신복현, 법무사 육군중령 황종태, 법무사 육군대위 정상용, 법무사 육군대위 이인수, 법무사 육군대위 이근일, 법무사 해군소령 전세봉, 법무사 공군소령 이원무.

### 3. 재판과정에서 고문 은폐에 방조한 혐의자들

육군대장 이세호, 육군중장 박희동, 육군중장 박현식, 육군중장 유병현, 육군소장 윤성민, 육군소장 차규현, 육군소장 신현수, 육군소장 이희성, 육군소장 강신탁, 판사 박천식, 판사 권종근, 판사 신정철, 판사

문영극, 판사 박정근, 검사 김태원, 검사 김진석, 검사 송병철, 검사 정태균

위 사람들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들을 가려 철저히 조사하고, 또 고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김지하, 나병식, 전창일 등 사건 관련자, 이영교, 임인영 등 가족, 강신옥 등 변호인, 전병용 등 서울구치소 교도관, 사체의 고문 흔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 함세웅 신부 등을 조사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참혹했던 이 사건의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의있는 조처를 기다립니다.

2001년 11월 26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김학민 외 157인

인혁당사건대책위원회 유가족 이영교 외 21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공동 접수하며

1974년 4월, 온 국민이 유신의 압제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였던 우리 민청학련사건 관련 동지들은 오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공동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려 한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군사독재정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소위 10월유신을 단행했다. 명치유신을 본뜬 일본군 출신 박정희의 이 어줍잖은 짓거리는 어둡고 광기어린 시대 70년대의 서곡을 장식했지만, 청년 학생들은 이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1973년 가을의 유신헌법화 최초의 시위를 시발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요구의 열기 속에서 1974년 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총궐기하기로 한 것이 저들이 이름붙인 소위 민청학련사건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조작고문 정치의 하수인인 중앙정보부와 육군보안사령부에 지시하여 전국에서 청년, 학생, 종교인, 교수, 정치인 등 1천여 명을 민청학련사건 혐의자로 체포하였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돌과 몽둥이, 화염병 등으로 중앙청, 청와대 등 정부기관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노농정권을 세우려 계획했으며, 그 배후세력으로, 첫째 다찌까와, 하야까와 두 일본인과 연결된 국제공산당 조직, 둘째 북한의 지령을 받은 도예종, 서도원 등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 그룹, 셋째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등 국내 불순 쟤야인사들을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영장없이 연행된 1천여 명의 혐의자중 254명이 구속되었고, 이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소위 비상군법회의에서 사실상의 비공개재판 끝에 사형, 무기, 20년, 15년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

정된 지 17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이 있은 지 27년 — 이제 한 세대라는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이 사건도 현재적 시점으로부터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정에 의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의 하나라고 발표되었던 소위 인혁당 재건위에 관련되어 처형되었거나 옥사한 분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인사들이 아직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도 반증된다.

#### 민청학련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1. 이철, 유인태 등 학생들은 1974년 4월을 기해 유신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전국적 동시다발 시위를 조직하려 했다.
2. 이들은 이로써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켜 유신체제를 약화시키고 민주제로의 복귀를 목표로 했다.
3.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등은 국가를 전복하도록 배후 조종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돋는 약간의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4. 하야까와, 다찌까와 등 2명의 일본인은 국제공산당원이 아니라 한국의 학생운동을 취재하러 온 프리랜서 기자일 뿐이다.
5. 북한과 연결되어 민청학련사건 관련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소위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고문과 조작에 의한 기소와 판결로 희생되었다.

#### 박정희 정권의 진실은 이렇다!

1. 중앙정보부와 육군보안사령부는 학생들을 반국가 음모자로 몰기 위해 구타와 고문으로 사건 내용과 증거들을 조작했다.
2. 중정과 육군보안사령부는 학생들에게 용공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소위 국제공산당 조직과 인혁당 재건위 그룹을 배후로 조작했다.
3. 소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중정과 보안사의 조작된 조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군법회의에 기소했으며, 고문사실을 은폐했다.
4.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조작된 조서와 증거를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으며, 법정진술까지 위조하여 대법원에 송치했다.

5. 대법원은 완전히 조작된 1, 2심 재판자료를 근거로 8명의 사형을 확정, 집행하게 했다.

이 진실들을 보라! 이러한 진실들을 묻어두고 8명의 억울한 생명을 끊었으니, 이것이 사법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에서 처리되기를 요구한다.

1. 국민들의 반공심리를 악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관련자들이 제외되서는 안된다.
2. 민청학련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용공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조작된 소위 인혁당 등 배후 관련자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사형, 옥사, 병사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나 지속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독재정권의 조작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이국땅에서 힘들게 수형생활을 한 두 일본인에게도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5. 실형은 살지 않았지만, 영장없이 체포되어 구타, 고문 등의 고통을 겪은 800여 명의 관련자들에게도 명예회복과 보상의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한다.

자유와 민주,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한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이 국민의 혈세로 세워지고, 그 독재자의 딸이 국가 지도자감으로 운위되는 이 현실, 이 희극의 시대에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할 것임을 믿고, 이 참담함을 가슴에 담는다.

2001년 12월 7일

#### 민청학련관련자 명예회복 공동접수자 일동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석구 선생

### 및 인혁당 사건 증언발표에 대한 입장

부당하고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로부터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청학련 사건은 이미 학계와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으로 규정되었고, 사건 관련 인사들이 각계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여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발생 27년이 지나도록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 중 유독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심이나 사면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사형당한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국제법학자 협회가 1975. 4. 9. 사형이 집행된 바로 그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규정한 것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8분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7분 그리고 20년,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8분과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옥사한 장석구선생, 유족과 위 사건의 생존관련자들은 27년 동안 모진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결 같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조작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가족들은 그 참혹한 죽음앞에 어린 젖먹이를 안고 절망과 분노에 떨어야 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감옥에서 꽂다운 젊은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고문에 대한 수많은 증언, 증거 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피의자 심문조서 변조, 중앙정보부의 개입, 위법한 재판 절차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피

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혀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석구 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제기되어온 고문, 증거조작, 공판조서의 변조 등의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며 유신체제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인혁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민청학련과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진영과 관련인사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98년에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인혁당대책위)” 조직되었고, 99년에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 선언 성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혁당대책위원회에서는 다큐멘터리(“4월9일”)를 제작하고, 책자를 발간(“사법살인”)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2001년 11. 당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과 참혹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청학련 관련자들(100여명)과 함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인혁당사건에서 자행된 참혹한 고문 등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히고,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지낸 희생자들의 유족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러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유족들과 관련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추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심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들과 관련자들은 재심청구를

하고 싶어도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 재심청구의 법률적인 요건이 너무나 엄격한 문제 때문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문, 증거조작, 공판조서 변조, 위법한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의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미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도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02. 9. 12

###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인혁당사건 유가족 및 관련자 일동

## 인혁당대책위원회의 인혁당 사건

### 재심청구에 관한 입장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새로 발견된 증거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제출 또는 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명백한 증거란 새로 발견된 증거 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적으로 우월할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진술이 수사 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 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사정 아래에서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재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3.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

록 등의 물증이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고문을 목격하였다거나, 직접 고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수사관들의 증언,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교도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조사장소 및 일시의 기재가 허위라는 수사관들의 증언, 검사가 조사할 때 중정의 수사관이 참여를 하였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교도관들 및 변호인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증언 등이 새로 나왔던 바 이는 과거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증거들이므로 신규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4. 한편 위와 같은 증거들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앞에서 본 대로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진술이 수사 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 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불만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만으로는 재심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재심사유가 될 만한 위와 같은 증거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나온 것이므로 명백성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과거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불만한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당연히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5. 95년 한 방송국이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315명의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이었다고 결론내려진 바 있다.

우리 인혁당대책위원회는 이제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하여 사법살인임이 명백히 드러난 소위 인혁당사건

에 대해 법원 역시 당연히 그 진상을 밝혀 바로잡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재심청구에 들어가고자 한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혁당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돈명, 박형규, 문정현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서 조작

의문사위 “고문으로 증거·조서 허위작성”

지난 1974년 당시 유산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연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유신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됐다.

▶ 관련기사 2·3·7·31면 대동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眞)는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사망한 장석구(당시 6세)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고문에 의해 증거조작,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 면조 공문조서 허위작성, 정

수사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이 기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증경 수사관들과 증정에 폐견된 경북도경 경찰관들이 등장이 법적,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했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관들과 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에 따르면 증정은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의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장소와 조사일시를 허위로 기재 했으며 검찰 조사 때도 수사관을 참여 시켜 피의자를 협박·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서울기자  
a.lee@idaily.com  
2면으로 [▶]

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출판물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간이 언급됐던 인혁당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규명위는 지난 발표문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충돌한 것 은 당시 중앙정보부”라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대상군법회의 관찰사건의 정보 수사와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

다. ‘는 대동령 긴급조치 2호 10항에 따라 “수사 지휘는 증정 6국이 하고 조사는 경찰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 유신 ‘공작살인’ 국가서 첫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 전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발표 내용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차례대로 간추린다.

● 조직결성의 증거 유·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직결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공식 출판 사자, 학생들 선언문,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관련 자료 등이 있을 뿐 강령 규약, 조직문서, 증명 기록 등 자파당 결성과 관련된 증거는 없다.

●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가한 고문

의 실상 증경 수사관들과 증정에 폐견된 경북도경 등의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물통이

(여전히 대봉 등) 행운, 통닭구이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을 자행했

다고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증

언했다.

서울시감 소속 경찰 전OO는 국방

색에 아련한 전화기로 미의자를 전기

고문하였다고 전술하고 있다. 경북도

경 경찰 이OO은 물

고문하는 것을 보았

다고 하며 자파 보인

리실은 고문을 하는

장소라고 전술했다.

● 각본에 의한 수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서 증정에서 갑작스럽게 조사했다. 당

시에 증정간부가 1차 인혁당 관련 기

록을 보고 있었으며 증정에서 짜놓은

각본에 맞춰 조사했다고 전술하고 있

다. 수사팀장인 윤OO이 수사관들에게

‘돌진(조작사건)을 만들라.’고 지

시한 일도 있다고 전술했다.

● 고문을 통한 피의자 자백 강요 수사

관 이OO. 신OO이는 증정의 지시가

사실관계 및 상식과 어긋나는 점이 많

아 있었지만 윤OO이 지시하면 무조

간 조사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술

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관 조사 과정에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증정 수사팀이

고문을 한차례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재량 없이 시인조사를 작성할 수

였다고 전술했다.

했다.”고 전술하고 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 나OO은 “대구팀의 증정에 서 경찰관과 같이 조사를 한 것은 증정에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목적은 행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전술했다.

● 공판조서 허위 작성 재판을 저지른 변호사를 교도관들, 피고인의 가족들은 공연기록이 나타난 허위기재 사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부인한 행의사실을 증정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둘째는 철법칙인 고문 수사에 항의하는 반연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 위법한 재판과 행의사실들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적인 증언을 빼거나 증언자를 재판부에 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티구나 피고인들이 고문당한 사실을 증언하면 재판부에서 막는 경

우도 있었다. 연구로 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난 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 경찰관들로부터 접

단구타를 당하기까지 했다. 피고인 가족도 생활이 한 피고당 1인으로 재판

됐으며 기자들도 방

정이 재판되어 봐도

하지 못했다.

● 전격적인 사형집행 안혁당 재건위 사

건 사형수들의 형 집행

평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집행 현장	
● 증정사내이	당시 죄법
서도로	52 대구제8신문 농성위원
도의원	51 강씨 등 수고 고육관
경찰관	43 건강관
마수법	38 신작원이현을 검사
증정관	40 경기미교교사
우유신	44 출판스코트사 상무
증상관	47 영광관
여성관	30 무역

대법원에서 행의 확정된 다음 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새벽에 경계적으로 집행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최소한 몇 개월,一般是 2~3년 지난 뒤 집행된다.

● 유신의 허위작성 사형수들은 사형장에서 죄후관습을 할 수 있고 사형집행 명령부 이고관에 기록된다. 그런데 사형집행명령부에는 도예중에 ‘조국 이 하루 속히 적화통일 되기로 바랐습니다.’고 판했다고 기록해 있고 8인의 비고관 가장 아래에는 모두 종교에 대한 믿음을 기록해 있다. 그러나 당시에 사형장면을 목격했던 교도관 사가 물으면 예라고 답할 것을 강요당 했다고 전술했다.

## “인혁당 진상규명 이제 시작 조서만 봐도 中情조작 확실”

■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육교 서 중석 교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앙정보부의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공개돼 본격적인 연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8년만에 증거의 조작극이라고 밝힌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육교까지 치렀던 성균관대 서중석(54·시진교수)은 13일 ‘증언 중심으로’ 이뤄진 의문사진 조사에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진실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사위는 12일 74년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되었거나 조작된 사건으로 밝혔다.

74년 서울대 국사학과 4학년 재

학증 민청학련 사건인 서답당객으로 거기된 서교수는 서울 남산의 증경 조사실로 들어가 1개월 반동안 밀고문과 풍동이 빙질, 감언재우기 등 갖은 고문을 당하며 7차례 조사를 작성했다.

서교수는 “말이 진술조서지. 수사관들이 미리 증언해놓은 것을 인정하고 고문하는 죄이었다”며 “당시 진술조서만 봐도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인별로 7~10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북한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주요시설 방화 등을 통해 국가전복을 노렸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74년 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12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변인 김기현 신부(기운데)와 유가증들이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



를 통해 원전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당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육사한 강석구

세 사람 사건을 조사했으나, 장씨의

직접적인 사방증언에 대해서는 밝

히지 못했다.

한편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와 유가증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석기자)

greenlee@nunhwa.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74년 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12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변인 김기현 신부(기운데)와 유가증들이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란

### ‘정부 전복세력’ 조작 8명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은 1977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혁당 관련자 8명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지 20여시간 만에 처형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사법살인’으로 비난받은 사건이다.

당시 증점은 ‘도예증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원을 받아 민청학련을 베푸니 조종

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앤네스티도 ▲번호인증 증

인이 한 사람도 재판되지 않은 경

▲피고인의 가족 중 한 명만 방침

을 허용받는 등 재판이 통제된 점

▲관계당국이 공식적인 재판기록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한 점 등 외

혹은 제기하는 등 군사증권의 대표

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 “인혁당사건은 中情조작극”

가혹 수사·진술 위조…국가전복 기도 증거없어

### 의문사위, 첫 공식확인

당신은 때문인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혁당 재건위와 사건은 조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월 74년 4월 북한의 지원을 받아 마땅히 조사한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그동안 어려워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현기자 21면)

진상규명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증점은 당시 도예증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규명위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설마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괴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증점이 과연 경찰관을 동원해 구타와 밀고분,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모친 고문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하재완씨 등 관련자들이 날장과 폐농양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



◇인혁당 진상규명 및 증거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는 청원 신부(기운데)와 유가증들이 12일 오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 사건 벌트 후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을 표명하고 있다. /제

### “장준하 선생 타살 가능성”

의문사위 “사고목격자는 中情요원” 진술확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2일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의사봉에서 떠 문의 폭음을 당한 재아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과 관련, 당시 유일한 시고 목격자 김모씨가 ‘증점 정보부 요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준하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이어서 주목된다.

장준하 선생은 “최근 당시 증점

직원으로부터 김씨가 증점 정보부에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그러나 이 직원의 기억이 확실치 않고 이전에는 이와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법준기자 weiv@sgt.co.kr)

한국 인터넷 접속료

저 네계 14 기자 저력

人革黨재건위 사건 출소한 15명 중 5명

## 고문후유증 앓다 사망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1982년 출소한 15명 중 5명이 각종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법·韓相範)는 14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8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재권·이태환·정만진·유진근·조만호씨 등 모두 5명이 80년대 중반에서 지난해까지 50대 중반~70세의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도예종씨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20시간 만인

75년 4월 8일 오전 6시에 형이 집행

됐었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출소 직후부

터 공통적으로 대인기피증세를 보였

고, 구속 이전에 없었던 고혈압·정신

질환·심장병·척추장애 같은 질병에

시달렸다"며 "고문으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주·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전기고문을 많이 당한 전재권씨는 이미 구치소에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빼졌고 고혈압을 앓았으며, 출옥 4년 만인 지난 86년 잠을 자다가 '기습이 달달하다'는 말을 남기고 58세에 돌아왔다.

98년 58세 어립장마비로 사망한 정만진씨도 교도소에서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을 알아 줄곧 누워 있었으며, 80년대 중반에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한편 생존자 중에서도 임구호·강창

대·전창일씨 등이 고문으로 인해 척

주증에 5급 판정, 어혈·대인기피증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의

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고문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 "인혁당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의문사위 "74년 당시 고문·조서 위조 드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법·韓相範)는 지난 4년 북한의 지령으로 학생사위를 조종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12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점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보부는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중경 수사팀장인 윤모씨가 '물건(조작 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전 중정간부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 보일러실에서 팽팽이(고문)를 풀었고 이후 피의자들은 전혀 부인을 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관 이모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피의자들은 고문 후 유동으로 제대로 겉지도 못했고 심

지어 앉아 있지도 못했다. 고문으로 말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으로 폐농양증이 생겨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다"는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 전모씨의 진술도 공개했다.

정경은 당시 사건조작의 주체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진술조사를 작성토록 했으며, 한 수사관은 "경찰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 증정 직원들이 상시 일회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는 군사법원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부인한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고문에 관한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 조서를 위조했으며, 죽음을 앞두고 한 유언마저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 '9·11' 바이러스 이메일 주의보

미국 9·11 테러 1주기를 맞아 이를 악용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쳇(Chet) 바이러스'는 9·11 테러가 미국 정부와 빙 라덴의 협동작전이라면서, 진실을 알고 싶으면 첨부파일을 실행해 증거 자료를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은 "리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바이러스가 아직 국내에는 유입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내에 유입될 경우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 예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를 담은 메일은 제

목이 'All People'이며 발송자

유신반대 투쟁 배후 지목... 8명 사형

###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란

분이 있던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씨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 지원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을 합쳐 총 263명이 구속됐다. 75년 2월 이 중 대부분은 석방됐지만 인혁당 관련자 23명은 골내에 왔다.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도예종·이수봉(일본여학원 강사)씨 등 8명은 같은 해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고, 선고 20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 형이 집행됐다. /安容均기자







## “사형수 8人 미망인 보니 가슴 미어져”

‘인혁당 사건’ 조작 폭로로 추방됐던 시노트신부 내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해요.”

15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태평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朴炯圭) 대회의실,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내한한 벽안의 짐 시노트 신부(73·미국·사진)는 자기 앞에 앉은 인혁당 사건 당시 사형당한 8명의 고인의 나이든 부인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시노트 신부는 1974년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폭로했다가 정부에 의해 추방됐던 인물. 94년 한국을 찾은 적이 있으나 이번 방문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인혁당 사건이 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발표한 뒤 여서 그의 강회는 더욱 커졌다.

시노트 신부는 이날 간간이 우리말이 섞인 영어로 인혁당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거리에서 경찰들에 맞서 싸우던 여성들이 나를 감동, 고무시켰지요. 이



분들의 ‘입’이 되어 전국을 돌며 이들의 남편들이 어떻게 고문받고 협의가 조작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 “내 생애 최악의 날은 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된 날이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일부 밝혔으나 앞으로는 억울하게 숨진 그들과 가족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추방된 뒤 시노트 신부는 라디오에서 장준하 선생이 등반 도중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신정권에 의해 뭔가 또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해외 인사들이 16일부터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돌아보는 행사를 갖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朴炯圭 목사)가 초청한 해외 민주화인사 67명은 16일 오후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서울 수유리 4·19묘지 인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의 만찬을 시작으로 5박6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70~80년대 독재항거 도왔던 해외 67人

## 민주화현장 돌아본다



의 한국 군사정권 지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40년 이

상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 인권

개선과 민

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김동건

전 ‘김대중구출위원회’ 위원장,

제일한국인 정치범 구명운동을

펼쳐온 오카모토 하즈시(岡本厚)

세계지 편집장 등도 이날 입

국했다. 이에 앞서 인혁당 재건

위 사건 조작에 항의하다 강제

추방됐던 조지 오글(73) 목사,

짐 시노트(73) 신부도 일찌감치

방한했다.

그러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宋斗律·58·뮌스터대)

교수의 방

한은 국가정보원측의 불허로 또

다시 좌절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해외 인사들이 16일부터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돌아보는 행사를 갖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朴炯圭 목사)가 초청한 해외 민주화인사 67명은 16일 오후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서울 수유리 4·19묘지 인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의 만찬을 시작으로 5박6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들은 17일에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갖고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한 뒤 18일에는 광주 5·18묘역을 참배한다. 19일에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리는 부마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20일 도라산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위해 13명의 초청인사가 이미 방문한 데 이어 페리스 하비(67·목사) 국제노동인권기금 사무총장 등 나머지 인사 54명이

70~80년대 독재항거 도왔던 해외 67人  
민주화현장 돌아본다



하비 사무총장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40년 이

상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 인권

개선과 민

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김동건

전 ‘김대중구출위원회’ 위원장,

제일한국인 정치범 구명운동을

펼쳐온 오카모토 하즈시(岡本厚)

세계지 편집장 등도 이날 입

국했다. 이에 앞서 인혁당 재건

위 사건 조작에 항의하다 강제

추방됐던 조지 오글(73) 목사,

짐 시노트(73) 신부도 일찌감치

방한했다.

그러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宋斗律·58·뮌스터대)

교수의 방

한은 국가정보원측의 불허로 또

다시 좌절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